영재교육연구 제 20 권 제 1 호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10. Vol 20. No 1, pp. 231~256

영재교육기관 교원자격에 관한 법 규정의 검토

박 창 언 부산대학교

서 혜 애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자격 제도에 관한 법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재교육진흥법'의 성격과 연구의 기본틀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비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아동을 위한 교원과는 다른 교원자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상의 교원자격에 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법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법 규정의 검토를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임용, 자격규정, 영재교육 담당교원 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자격과 교육프로그램의 최소한도의 규정성, 그리고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성보다는 공통성을 규정하고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위한 교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 담당교원, 교원자격 규정

I. 서 론

영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

교신저자: 서혜애(haseo@pusan.ac.kr)

이나 가족의 특수한 문제로 국한시킬 수도 있으며, 국가적·지구촌 차원의 인권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해 각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체제가 진행되고 있다. 영재도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성에 따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발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도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재교육과 영재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논의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밀접히 관련된다. 교육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사상은 공적인 교육체제 내에서 논의되며, 이는 곧 교육이 사회제도의 한 부문으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영재교육도 국가가 일정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은 문화적 활동의 일부로서 자율적으로 행위를 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이돈희, 1999). 국가의 통제와 자율성의 논리는 항상 논쟁의 초점이 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법과 관련한 권리성의 문제는 주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이론 체계가 구축되어 왔으며, 영재를 포함한 특수 아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실정이다.

특수 아동이라 할지라도 신체·정신적 장애를 지닌 특수 아동의 경우는 복지에 대한 권리로서 논의되고, 이들과 관련된 여러 연구 문헌과 단행본 서적 등이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이는 영재의 경우는 신체·정신적 장애를 지닌 아동들에 대한 연구보다 빈약하다. 교육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영재와 관련된 논문이나 단행본 서적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 문헌과 서적들은 흔치 않다(Zirkel, 2004). 다만 일부 논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동향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아직까지 영재교육과 관련된 교육법적 논의는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의 배경에 따라 그 제정과 개정 방향

이 적절히 구축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재교육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별 성장이나 발달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에, 획일화되게 규정하여 통제하는 형태로 법률이 마련되면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과 2002년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였지만, 최근까지 영재교육의 교육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제 겨우 몇 편의 논문에서 제기되고 있다(박창언, 서혜애, 2008; 박창언, 최호성, 서혜애, 2009).

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은 교육을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 영재교육에서 권리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판단보다는 교육적 논리가 우선적으로 강화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법규들이 정교하게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영재교육의 권리성에 대한 논의는 해당 영재교육 분야의 본질에 대한 접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영재교육의 권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재교육 이론과 연구, 교수법, 학급경영 등의 특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VanTassel-Baska & Johnsen, 2007), 영재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 전문성을 계발해야 한다(서혜애, 2008; 서혜애, 박경희,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영재교육의 권리성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에 대한 법적 체계와 구조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헌법 규정에 제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권리성을 살펴보고 난 후, '영재교육진흥법'의 체제, 명칭 및 목적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더불어 교육의 세 주체로 불리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교육내용적 측면에 한정하여 교육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논의결과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영재교육의 권리성을 담보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II. '영재교육진흥법'의 성격과 분석틀

1. '영재교육진흥법'의 성격

법은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법의 분류에서 국내법은 법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적 효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교육법을 특별법으로 논의하는 것은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법의 효력 범위가 일반적인가 또는 특수적인가에 의한 구분이다. 일반법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특별히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를 의미하며, 특별법은 일정한 표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째, 사람을 표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것이다.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 특별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다. 형법이나 민법 등은 일반법에 속하며, 군형법이나 소년법 등은 특정인에 대해 적용되므로 특별법에 해당된다. 둘째, 장소를 표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민법 등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며, 도의 조례나 규칙 등은 특별법에 속한다. 셋째, 사항을 표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것이다. 민법과 같이 일반적 사항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며, 사생활 가운데 상사에 대해 규율하는 상법은 특별법에 속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는 실제상의 이익은 법 적용의 순서를 정하는 데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충으로서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교육법의 성격 역시 법의 일반론적 분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학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법을 공법이나 사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별개의 법으로 보는 견해(안기성, 1994: 17), 특별사법으로 보는 견해(윤정일, 1991: 68), 공법인 동시에 특별법으로 보는 견해(한경주, 1983: 43)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이라는 현상이 광범하고 다양하여 단순히 공법이나 사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

문이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립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해결하기도 하며, 공립의 경우에는 행정 소송으로 재판 절차를 따르기도 한다.

일반법에 비해 교육법이 특수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율하는 법과 특수한 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일반 아동과 달리 특수한 능력을 가진 영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재교육진흥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에 대한 자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실제적인 이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분석틀

2000년 제정·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 이유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법제처, 2010). 이 제정 이유는,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직접적인 목적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간접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아실현의 목적은 개인의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내포하며, 국가는 이러한 인재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행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투자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교육의 본질적 목적으로서 자아실현은 헌법에 제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을 두며, 이는 영재교육에서도 일반 아동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동일한 사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영재의 경우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대 전제에서 여타의 교육관련 주체에 대한 권리나 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학습자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

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재뿐만 아니라, 이에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라는 세 요소가 필요하다. 이 세 요소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세 가지 쟁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분석틀을 형성하게 된다. 첫째, 영재는 일반 아동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재를 교육하는 사람인 교원은 일반 아동과 다른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 이유뿐만 아니라, 동법 제2조 및 제5조는 영재를 재능이 탁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하는 데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의 자격으로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이의 자격규정에 무엇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둘째, 교육내용 및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영재의 경우는 그들의 특성에 적절한 형태의 교육내용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요구해야 하는가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단순히 일반적인 국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을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이에 부합된 교과용 도서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재교육 담당교원이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면, 직전 교사교육과 현직 교사교육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제공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재교육 대상자는 획일적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영재들을 교육하는 기관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영재교육기관별로 영재는 어떤 부분에서 특수성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영재교육기관별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을 검토해

야 할 것이다.

III. 교원자격에 대한 법제 현황

여기서는 일반 학교에서 논의되는 교원자격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자격 제도에 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한다. 이는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담당교원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1. '초 · 중등교육법'의 교원에 대한 정의와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절은 교직원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 제19조는 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 2에서는 전문 상담 교사의 배치 등, 제20조는 교직원의 임무, 제21조에서는 교원의 자격, 제22조는 산학 겸임 교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정의와 종별 및 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구 '교육법' 제73조는 교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며, 동법 제74조에서는 교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 법 규정은 최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교원은 우선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각 학교는 구 '교육법'에 따르면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에 해당되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현행법에 의할 때, 학교의 종류는 초·중등학교 및 공민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영재교육과 관련된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기관에서 말하는 교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법률상의 교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재교육진흥법'에서 교원의 자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교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구 '교육법' 제74조는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교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21조는 교장 및 교감의 자격 기준, 교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사항들은 '초·중등교육법'의 제21조 제2항, '교원자격검정령'의 제4조 제3항, 제4조 제4항 1호 및 2호, 제4조 제5항, 제19조 제2항, 제6항 및 제7항,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제1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원자격 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자격에 대한 법적 규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초·중등학교 교원자격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까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둘째,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 자격은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률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교원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셋째, 교원의 자격은 그 효력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원자격은 그 자격증이 동일한 종류일 경우에는 교육기관이나 지역적인 차별없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정의와 자격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 달리

‘영재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2조는 교원의 임용·보수 등, 제12조의 2에서는 교원의 파견 근무, 제12조의 3에서는 교원의 교육 및 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제12조 (교원의 임용 · 보수 등)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 · 보수 · 수당 · 근무조건 ·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규정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 기준의 예외가 인정됨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25조에서 제31조에 이르기까지 영재교육을 위한 교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25조는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6조에서는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7조는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제28조에서는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겸임 근무 등, 제29조는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30조에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제31조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원자격에 대한 사항은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25조는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원의 자격이 있는 경우와 교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교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을 구분하여 그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영재학교의 경우는 교장, 교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재학급의 경우는 영재학급의 담당교사

에 대한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자격이 없는 경우는 박사학위 취득이나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나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경합할 경우, 교원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26조는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의 경우는 교원으로 원장과 강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원장과 강사의 경우는 자격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강사의 경우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담당 영재교육 분야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강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원에 두는 강사의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하위법인 시행령에 대부분 위임하고 있다. 일반 아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둘째,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이 개방적이다. 일반 아동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은 엄격한데 비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은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여도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셋째, 영재교육 담당교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교과목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 아동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법 규정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IV. 영재교육기관 교원자격 제도의 검토

여기에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임용, 자격 규정, 영재교육 담당교원 자격을 위해 이수해야 할 교육프로그램의 교과목, 그리고 영재교육기관별로 차별화된 교원자격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임용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은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문을 검토해 보면,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동시에 임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법 조문 바로 뒤에는 '교원의 임용 및 보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자격과 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일반교육 담당교원의 자격이나 임용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를 지닌다. 하지만, 자격과 임용에 대한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일반론적 교원의 자격이나 임용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아야 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의 자격과 임용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의, 자격, 임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일부로서 규정하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1호).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 3호에서는 '임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법 제10조는 임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법 제6조에서는 교사의 자격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는, 해당 자격을 상세히 규정하며 자격을 지닌 자 가운데 신규로 채용될 경우뿐만 아니라 파면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범위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용어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제시된 교원의 자격이나 임용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법 조문을 검토해 보면, 승진, 정직, 파면 등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임용이 신규임용인지, 재임용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조차 힘들다.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해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론적인 교육관련 법규를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된다.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규정과 교원의 파견 근무 등은 일반교육 관련 법규에서는 모두 임용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영재교육 교원의 임용과 이에 해당되는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은 임용의 원칙을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교육현장에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소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해당 학교의 특성이나 학생의 특성 등에 따라 최적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는 "…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에서는 교원의 임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관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법률

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들 법 조문에서 제시하는 임용과 관련된 사항을 구분하거나, 임용 사항을 배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고찰된다. 예를 들면, 법 제12조의 제목도 '교원의 자격 등'으로 하고, 조문도 "…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혹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 될 것이다. 규정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 될 것이다.

2.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규정

자격은 일정한 신분 혹은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은 일신 전속적인 것이며, 종신토록 지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교원의 자격과 관련해 일반 아동의 교육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교원의 자격이 정해져 있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자격의 성격은 7가지로 분석된다(김낙운, 1986: 290-292). 교원이 될 자에 대한 최저의 교육 수행능력, 법률상 인정된 자격, 교원의 임용 요건, 권리의 형성 관계인 특허의 성격, 일정한 학력에 기초, 전국적으로 동일한 효력, 일정한 검정 절차를 거쳐 형성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교원자격의 성격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영재교육에서는 그 대상이 일반 아동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 성격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원이 될 자에 대한 최저의 교육 수행능력은 일반교육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교육과 영재교육의 교원자격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영재의 특성과 깊이 관련된다. 따라서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이에 따른 특별한 능력을 소유해야 하며, 법은 이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격규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규정에서는 영재를 가르칠 교육내용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수업방법뿐만 아니라, 영재의 특성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roft, 2003; VanTassel-Baska & Johnsen, 2007). 특히 영재교육은 일반교육에 비해 학습자의 특성을 더욱더 잘 이해해야 한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영재의 개인차, 영재성의 발현과 특성, 영재의 판별과 평가방법, 영재교육의 철학과 이념, 영재교육과정, 영재교수·학습방법, 영재교육 관련 규정, 영재교육프로그램 평가, 현 교육 이슈와 정책 등을 이해해야 한다(Karnes & Stephens, 2008).

이러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은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과 전문적 능력과 함께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홍원 외, 2000; Maker, 1982).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박경희, 서혜애, 2007) 첫째, 해당 전공영역의 지식이다. 이는 지식기반 전문성으로 제시된다. 해당 전공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첨단 지식을 이해하고, 해당 전공영역의 탐구방법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전공영역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능력이다. 이는 능력기반 전문성이다. 영재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수업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자유롭고 도전적인 수업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영재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상황기반 전문성이다.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교육체제 내에서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들은 일정기간 동안에 영재교육 직전 또는 현직 교사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규정은 영재교육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임용이나 보수 등에 대한 규정(법 제12조)이 존재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자격과, 임용을 할 경우 어떤 원칙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은 실질적인 자격이 무엇

이며, 자격을 소유한 자 가운데 어떤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는 영재학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에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영재학급의 경우는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에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교사 자격증에 부가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시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영재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에 대한 자격이라기보다는 기존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영재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 3의 교원의 교육 및 연수에 대한 규정에서 한 번 더 지적할 수 있다. 이 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교육 및 연수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연수와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연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교원자격에 대한 사항에서 교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영재학급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사학위 취득이나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석사학위 취득자, 해당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도 해당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함으로써 어떤 전공영역의 박사학위이든지 간에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명확히 하자면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등도 별도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이 규정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없다. 이러한 애매한 규정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자격과 관련하여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영재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에 대한 것이며, 일반교육 교원자격에 영재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

의이다. 영재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자격에 대한 사항을,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같이 학부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에서 영재교육을 전담하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직전 교사교육에 대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 규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찾기 어렵다. 이는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제한하고 어떤 교육체제를 통해 제공하느냐와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다.

다음으로 일반교육 교원자격에 일정한 연수를 이수한 자를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유자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있다. 현재 일반교육 교사들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다. 이들이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을 경우 새로운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교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학부에서 요구하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모든 교과를 이수했을 경우 해당 교원자격증이 수여된다. 그러나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경우, 일정시수의 연수를 이수하면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으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 측면은 일반교육 담당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직전 교사교육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할 방법이 없는 문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과의 관계 정립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에 대한 법제가 정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적절한 교원양성기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태, 사회전반에 걸쳐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영재교육 관련 법률 규정은 영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영재교육이 법적·제도적 장치 내에서 시작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연수를 받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영재교육 전공 석·박사과정을 제공하는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이 신설되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재고의 가치는 충분

히 있어 보인다.

3. 영재교원 담당교원 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영재의 특성에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은 영재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즉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어떤 지식을 어는 수준으로 갖추어야 하는 지가 여기서의 쟁점이 된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자격에서는 교원 자격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과와 학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교육 담당교원의 경우, 2008년 1월 8일자로 새로이 개정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을 살펴보면, 전공과목은 50학점(교과교육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교직과목은 총22학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에서는 학점에 따른 과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공영역은 표시과목과 더불어 관련학과나 학부를 표시하며, 기본 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열거하고, 이들 중에서 표시과목별로 기본 이수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직도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과목과 이수학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의 자격에서는 이수해야할 교육프로그램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만큼 자격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이에 비해 영재교육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이라고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공통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항은 곧 영재교육 담당교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 문제를 대두시킨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50개 주 가운데 영재교육 교원의 법적 자

격규정을 제시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주는 33개 주에 이른다(류지영, 2005).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영재교육 교원 자격규정은 일정기간(~5년)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로서 일정시수(~32학점)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거나 주 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 영재교육 교원자격을 부여한다. 이 가운데 앨라배마 주와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영재교육 석사학위를 의무화하며 웨스트버지니아 주와 텍사스 주에서는 자격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재교육 교원 직전교육에서 필수교과목으로 영재의 특성, 전공영역(과학 등) 교과교육학 및 영재교수방법, 전공영역 내용학, 영재교육 교생실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명시하고 이를 이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Davison, 1996).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교육내용 및 교과목의 표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에서는 영재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5~6개 정도의 필수과목을 제시하고, 각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 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교과를 선택하게 하거나 권고하는 방식으로 표준화와 차별화를 도모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특정과목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재교육 담당 현직교원에 대한 연수와 영재교육 담당교원 자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간에 중복성이 제기되거나 일관성이 떨어질 것이다.

교원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 포함시켜야 할 과목뿐만 아니라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육학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영재교육은 주로 특정학문영역을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교과교육학보다 교과내용학 위주로 전개되기 쉽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고찰해 보면, 교과내용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학습자이며,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교원은 교과내용학에 대한 높은 지식뿐만 아니라 교과교육학 및 교육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필수과목을 지정할 때 교과내용학, 교과

교육학, 교육학의 비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이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이들 교육기관마다 교원자격을 차별화되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영재교육기관별로 영재교육 담당교원이나 자격기준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우선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은 교사와 강사제도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은 강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관별로 교원의 기준은 다르지만, 강사의 기준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기관에 따른 영재의 특성, 영재교육과정의 차별화와 이에 따른 교원자격을 부여하는데 동일하거나 차별되는 자격부여의 이유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영재교육기관별로 영재들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 대상자의 최소요건에서 차이가 있어야 교사와 강사 제도를 차별화되게 운영하고, 이들을 교육하는 교원자격이 차별화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영재 선발기준이 각각 다르고, 그 특성 또한 달리 나타나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기관 역시 차별화된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차별화된 특성은 영재교육 대상자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합하는 형태의 영재교육기관으로 특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초등, 중, 고등학생이라는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차이나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통칭적 속성, 예컨대 영재학교는 특수한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전일제 학교, 영재교육원은 일종의 심화학습 등을 실시하며 일정시간을 이수하는 형태의 시간제 학교 등으로 차별화를 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재교육기관별 차이는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요건과 밀접히 관련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와 제7조는,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은 고등학교 이하

의 각급학교에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재학교는 일부 학교를 지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영재학급은 교과영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재교육원은 법 제8조에서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재교육기관별 차이는 설립 주체에서도 나타나지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내포되어 있다. 영재교육원은 과학, 기술, 예술이나 체육 등의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영재교육기관별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들 기관에 두는 교원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일면의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사의 자격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셋째,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별로 교원자격의 요건을 달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에서는 정교사 자격을 지닌 자로서 일정한 연수를 받은 자와 개방적인 교원임용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강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재교육원의 경우는 원장을 제외한다면, 강사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교사 자격을 지닌 자와 교원 자격을 지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하였으므로, 강사의 자격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없고, 이의 자격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초빙 교원, 기간제 교원 등의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강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강사라는 용어를 포함시키면서 이를 정의하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제23조 강사 등의 규정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7조의 겸임교원 등의 규정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영재교육기관의 강사는 고등교육법에 제시된 시간강사와 달리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강사의 자격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모두 동일

하며, 그 요건은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의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 강사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경우는 학사학위 이상이며, 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담당예정인 영재교육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이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 강사는 영재교육 담당교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재를 교육하는데, 그 기준은 완화되어 있다. 영재교육원은 법률상 강사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원자격은 교원이 될 자에 대한 최저의 교육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최저의 교육 수행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법 규정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김낙운, 1986: 290). 하나는 교원이 될 자가 법정의 학력과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수준의 검정에 합격될 정도의 학력, 다른 하나는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규정된 교과목을 능히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해석에 의하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경우도 최저의 교육 수행능력에 미달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강사의 자격에 대한 별표의 규정과 다른 교원의 자격을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영재교육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고, 사회 통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영재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정교사 자격에 추가하여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교육에 비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사의 경우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될 수 있다. 영재교육 담당교사와 비교해 자격 기준이 낮은 것이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이와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영재교육원과 같이 강사에 의존하여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성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는지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든지, 영재의 특성과 영재교육 이론 및 방법에 대한 이해의 최소한 수준이라도 갖추기 위해 영재교육에 대한 일정한 연수나 교육을 받은 자 등으로 최소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에 대한 법 규정의 검토를 통해,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비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의 특별법적 성격은 일반 아동을 교육하는 일반교육과 달리 특수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이 있는 영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의 본질이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에 있다면,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자, 영재교육 대상자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교육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면, 교육활동은 제대로 성립할 수 없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규정은 정책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법제화되어 있다. 법제화된 현황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며, 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재교육 교사연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직전 교사교육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수들은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영재를 이해하는 저변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님과 동시에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적 안목을 제대로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에 대한 법제의 정비는 이러한 법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영재교육진흥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겨우 지난 상황이고,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전반에 걸쳐 보완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법제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교원은 아동을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

전문성에는 고도의 지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일정한 전문 양성과정을 거쳐야 하는 측면 등이 존재하고 있다. 전문교원을 양성하는 주된 이유는 종국적으로 영재교육의 권리성에 근거하여 영재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있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이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보유함과 동시에 책무성 또한 가져야 되는 것이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에 대한 검토는 영재교육의 권리를 보다 더 잘 보장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교원자격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곧 영재의 판별이나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도 동시에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자격규정의 검토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연유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교원자격의 법 제도는 단순히 교원자격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임용 등에 대한 보다 더 많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법적 측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문 제기에 기초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면, 보다 진일보한 영재교육의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김낙운 (1986). **현행교육법해설**. 서울: 하서출판사.

김홍원, 조석희, 이윤식, 박주상 (2000). **영재교육 담당교원 양성 및 임용방안 연구**. 수탁연구 CR2000-1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류지영 (2005). 미국 영재교원 양성체제가 한국 영재교육 양성체제에 주는 시사. **한국교원교육연구**, 22(1), 69-88.

박경희, 서혜애 (2007). 영재교육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 탐색 연구. **영재교육연구**, 17(1), 77-98.

박창언, 서혜애 (2008). 영재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의 교육법적 검토. **영재교육연구**, 18(3), 543-568.

박창언, 최호성, 서혜애 (2009).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법적 쟁점. **영재교육연구**, 19(2), 211-240.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2.28. 검색)

서혜애 (2008). 영재교육 교사 전문성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행 · 재정 지원의 요구 분석. **영재교육연구**, 18(2), 175-200.

서혜애, 박경희 (2007). 영재교육 교사연수의 교사 전문성 신장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영재교육연구**, 17(3), 421-442.

안기성 (1994). **교육법학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윤정일 (1991). **교육법의 기본원리와 구조에 관한 법철학적 분석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이돈희 (1999). **교육정의론**. 서울: 교육과학사.

한경주 (1983). **교육법강의**. 서울: 법문사.

Croft, L. J. (2003). Teachers of the gifted: Gifted teachers. In N. Colangelo and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558-571) Boston, MA: Pearson.

Davison, J. (1996). Meeting state mandates for gifted and talented: Iowa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Roeper Review, 19*(1), 41-43.

Karnes, F. A., & Stephens, K. R. (2008). *Achieving excellence: Educating the gifted and talented*. Old Tappan, NJ: Pearson Education Inc.

Maker, C. J. (1982).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gifted. Rockville*, MD: Aspen System Corporation.

VanTassel-Baska, J., & Johnsen, S. (2007). Teacher education standards for the field of gifted education. *Gifted Child Quarterly, 21*(2), 182-205.

Zirkel, P. (2004). The case law on gifted education: A new look. *Gifted Child Quarterly, 48*(4), 309-314.

= Abstract =

Legal Imperatives Related to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Changun Park
Pusan National University
Hae-Ae Se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legal issues related to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For this end, first, the institutional processes of the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nd its legal characteristics were reviewed. The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ppeared to be superior to the 'La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the gifted to receive a proper education. In consequences, regulations related to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should require to obtain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in addition to general education teacher certification.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nd 'La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is not sufficiently articulated in terms of required and elective courses and hours to certify teachers for the gifted as well as their employment at gifte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conclusions, further attentions to legal imperatives in gifted education are called for establishing and upgrading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Key Words: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Teachers for the gifted, Legal regulation for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1차 원고접수: 2010년 3월 22일
수정원고접수: 2010년 4월 16일
최종게재결정: 2010년 4월 17일